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92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김준혁·최혁진·김문수
정을호·염태영·박희승
정준호·강득구·손명수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현행법상 의무 및 권리와 책임을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역별 여건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의안번호 13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u>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 본법」 제30조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 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 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 <u>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해</u>

<신 설>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